(2020)년도 정기 (   ) 승진시험 주관식 답안지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반드시 이면에 기재한 주의사항을 읽어본 후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굵은 선 안에만 정자로 기입)

시험 과목		집		계			확	인
		1차채점	2차채점	계	평 균	배 점	이기자인	검 인

※ 연락번호	제 1 차 채 점	점 수	위 원
		59.5	

검인

사례답안은 다른 분들에 비해 답안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만 사례서술에서 필요없는 부분의 서술이 많아 같은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해 진 것으로 보여지니 모범답안 참고하시고 이 부분 개선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락번호	제 2 차 채 점	점 수	위 원

감독관인

※ 연락번호	시험과목	형사소송법.	성 명
	소 속		(한글)
	응시번호		(한자)

프라임법학원

응시자 주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위배하여 작성한 답안은 무효처리 되며
시험 부정 시에는 이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1. 이 답안지는 표지 및 초안작성용 제외 5매이므로 답안지를 받는 즉시 매수와 페이지 표시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1매라도 분리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표시된 굵은 선 안에 계급, 시험과목, 소속, 응시번호, 성명(한글, 한자)을 빠짐없이 정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3. 답안지는 1부만 제공되며, 답안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범위 내에서만 작성한다.

4. 답안작성은 가로쓰기(횡서)로 작성하되, 청색 또는 흑색필기구(싸인펜, 연필 사용 불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괘선 내에서만 기재하여야 한다.

5. 작성한 답안 수정 시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수정 시에는 내용이 보이도록 두 줄로 평행선을 긋습니다.

6. 답안 및 초안 작성 시 이종의 필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예: 연필로 초안 작성하고 답안을 플러스펜으로 작성하는 등).

7.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답안지와 문제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져가서는 아니된다.

9. 시험 답안지 표지 하단 점선 중간에 위치한 감독관확인란에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초안작성용지

(응시자절취금지 및 절취선 우측에만 기재)

1. 현체 요건. 절차. 명 / 필 / 비

✓ 통비법 위반 여부 ✓

✓ 수사기관 녹음 법적성질.

2. ~~피해자 당사자 녹음 적법성~~ 법적성질 ✓

수사기관의 비밀녹음 증거능력 ✓.

(영장 ~~

+ 사본 ✓ 동일성 / 무결성.

현장녹음 ✓

3. (체포현장에서의 검증 ✓. / 사진촬영 적법성 ✓

진술서 ✓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피의자로서 지위?).

4. ① 성매매 영업장부 법적성질. (§315-3. / Ⓟ 제3인 작성진술서 / 조서.

② 사본으로서 사진.

(비. / 진. / 기.

조서.

사안

검:

증

능.

증거.

능.

사례 34/50
첨삭
0.5/1
(7/8)
함정수사 논점이 빠져서 감점이 되었음

문1. 甲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甲이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다. (절차는 준수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논하지 않음)

①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② 현행범 체포에 해당여부

1. 의의.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의 자이며. 누구든지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다. <또한 준현행범인이란. ① 범인으로 추적되어 호창되는 자, ② 흉기 또는 장물 등을 소지한 자, ③. 의복 또는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자. ④ 누구냐고 묻음에 도망하는 자이다> 서술할 필요 X

2. 현행범 체포의 요건. 2/2

① 범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하고, ②. 체포의 필요성. ③. 비례성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함)을 요건으로 한다.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에 대하여 ①.긍정설.(영장주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② 부정설(영장에 의한 체포도 요하지 않는다.) ③ 절충설(도주우려는 요하나, 증거인멸의 사유는 불요한다)이 대립하고. 判는 범죄의 가벌성. 현재성.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 이외도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며. 피의자 인권보장 측면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현행범 체포의 판단 기준.

判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의 경우 이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적법하고, 1/1

사안에서. 경찰관 P1은 甲의 안내에 따라 업소 내실로 들어갔고

이후 여종업원이 성매매 실행에 착수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甲은 성매매 알선의 현행범의 요건을 갖 (범행 직후의 자로서) 추었다고 보여지며. 성매매 범죄 특성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도 볼 수 없어.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① 영장주의 위반여부
②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부
③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④ 사본의 증거능력

설문(2) 서술은 완벽합니다 다만 논점이 많은 설문이므로 양을 줄인 필요가 있습니다.

문2. (12/12)

1. 문제의 제기 1/1

① 경찰관 P1의 甲과 A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통비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② 수사기관 비밀녹음의 법적성질 및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지 ③. 해당 녹음 CD의 법적성질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문제된다.

2. 통비법 위반 여부. 3/3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判例는. 타인간의 대화란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다. 대화의 일방이 녹음하는 당사자 녹음의 경우 ① 프라이버시 침해로 위법하다는 견해 ② 공개장소는 적법, 사적장소는 위법하다는 견해 ③. 당사자 대화는 침해되는 프라이버시가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가 있고. 判例는 강간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음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대화의 당사자녹음은 비밀성이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안에서 경찰 P1은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경우. 통비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3. 수사기관의 녹음 법적성질. 및 영장주의 예외 3/3

1) 수사기관의 녹음에 대하여. 강제력 행사가 없어 임의수사라는 견해도 있으나. 사생활 보호법익이 침해될 수 있어 강제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강제수사설에 따르면 영장이 필요하나. 사안의 경우 영장 없는 녹음이 허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2)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녹음.

判例. 범죄의 현재성. 증거수집의 필요성.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영장없는 비밀녹음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위 요건과 더불어 ① 녹음장소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녹음장소 상대방이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형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안의 경우. 현재성. 필요성. 긴급성 갖추고 있다 보여지고, 영업시간 내 통상의 방법으로 출입한 바, 예외적으로 녹음이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3). 현장녹음의 법적성질 3/3

(1) 사안의 D의 녹음 파일은 범행 전후 상황이 녹음된 현장녹음으로 보여지는 바, 현장녹음의 법적성질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문제된다.

(2) 학설.

① 비진술증거로 관련성만 인정되면 된다는 비진술증거설. ② 조작가능성과 사실보고 기능으로 진술증거라는 견해. ③ 비진술증거이나 조작가능성을 고려하여 검증조서에 준한다는 검증조서 유추설이 대립한다.

(3) 判

判는. 뇌물사건 공갈사건에서. '형사소추에 꼭 필요한 증거라고.

판례하여 비진술 증거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장녹음은 범행 전후를 녹음한 것으로 그 내용의 진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진술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1/1

P1의 甲 및 A에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은 당사자 녹음으로 통비법 해당되지 않고,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또한 해당 녹음은 현장녹음으로 비진술 증거로 보아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해당 녹취 CD가 원본 파일 복사한 것이라면, ~~원본~~ 복사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는 경우 (동일성. 무결성) 증거로 할 수 있다. → 사본의 증거능력 1/1

(10/12)

문3. 1/1

① 몰래에 대한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② 진술거부권 불고지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해당여부
③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① 몰래 촬영의 법적성질. ② A 진술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A가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 즉 피의자로서 지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A 진술서 증거능력 요건을 살펴본다.

4/14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의의 정도만 서술해도 됨

1) 의의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는 체포자의 안전과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긴급행위설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요건.

① 체포가 적법해야 하고, ② 체포의 근거가 되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

어야 하며 ③.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고 ④. 피의자의 신체 및 직접적 지배下에 있는 증거물, 내지 흉기에 해당한다.
⑤ 또한 압수물은 계속하여 압수해야 하는 경우. 지체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영장없이 혼동을 촬영한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또한 혼동을 촬영한 사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후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A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5/6
1) A의 법적지위 2.5/3
A가 피의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A에대해 수사의 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判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가지고 실질적인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수사의 대상은 성매매알선 혐의의 갑이었고, A에 질문한 것도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 알선 관련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甲과에 A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따라서 A를 피의자로 볼 수 없고,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 위법수집 증거로 볼 수 없다 까지 언급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2). A 진술서의 증거능력. 2.5/3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자 진술서'로 312조 ⑤에

따라서, §312-④이 적용되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원진술자에 의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반대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된다.

(5/18) 소결 0/1

①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
② 전자정보 압수절차의 적법성
③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인정여부
④ 전문법칙 적용여부
⑤ 사본으로서 사진의 증거능력

문4. 0/1

1. 영업장부 촬영사진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①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② 전자정보 압수 요건. ③ 영업장부의 법적성질 및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2. 영업장부 법적성질 1/2

영업장부는 업무상 반복적,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315 2호,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판례도 성매매 영업장부에 대해 §315 2호를 적용한 바 있다.

사본으로서 사진의 증거능력 0/5

3. ~~사본으로서의 사진~~

이 부분도 논점이 되나 삭제한 관계로 점수 배당되지 않습니다.

~~① 비진술증거로, 원본과의 동일한 정사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② 원본존재, 진정성립,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315 3호 적용된다는 전문증거설 ②. 원본증거가 비진술이면 비진술증거, 진술증거이면 진술증거라는 구별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②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을 진술증거로 보는 진술증거설의 입장이며, 구별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성매매 영업장부는, 그 출처자체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원본 증거가 비진술증거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사본 증거 또한 비진술증거로 판단된다.~~

사안의 경우, 핸드폰을 임의제출로 적법하고 전자정보 압수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영업장부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사진으로서, §315 3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된다. 0.5/1

문제 1. 엄격한 증명. 16.5/25

1. 의의. 1/1

법관의 증거조사를 거치고, 법률상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 구별. 1.5/2

증거조사 및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증명과 구별된다. 양자 모두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를 것을 요한다.

3.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 3.5/5

형벌권의 존부 다.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바,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 구성요건 해당성 및 책임.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판례는 수뢰죄의 범의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2) 처벌조건.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사항으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가중. 감경 사유. 2/3

형벌 가중요건. 감경사유 또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누범, 상습범, 심신미약 등). 그러나 판례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경험칙과 법규. 2.5/3.5

경험칙과 법규는 원칙적으로는 불요증의 대상이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 성립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5). 몰수 2/2

몰수 판례는 몰수대상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 하였으나. 이는 형벌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엄격한 증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소송법적 기초사실. (자백의 임의성) 4/6

①. 소송법적 사실로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설. ②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엄격한 증명을 한다는 견해 ③ §309 전단은 엄격증명. 후단은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判는. 소송법적 사실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법리사실 0/1

7).

사례 (1)의 누락논점 (추가)

1. 함정수사의 적법여부. 3.5/4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인의 범행을 기다려.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으로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사의 신의칙과 관련하여서 그 허용범위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①. 피의자의 범의를 기준으로 범의유발은 위법. 기회제공은 적법하다는 주관설 ②. 수사기관의 유도행위가. 기준이라는 객관설. ③ 주관설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유도행위를 고려하는 종합설이 있다. 判는 기본적으로 주관설 입장이나. 유인자 지위역할. 유인 방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 주관설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는. 애초. 甲에게 마약사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적법한 함정수사라고 보여진다.

문표-2. 공소장 일본주의 (9/25)

1. 의의 1/1

공소제기 시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뿐이며, 그 외 다른 자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어라도

2. 취지. 및 이론적 근거 1/2

공판중심주의, 예단배제주의 등, 피고인의 지위 보장이 그 취지이다.

3. 내용.

원칙이 금지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을 서술해주어야 함

1) 첨부금지. 0.5/1

공소장 외 예단을 줄 수 있는 증거, 서류 등의 첨부가 금지된다.

법관의 선입견 체포영장 등

2) 인용 금지. 0.5/1

예단을 줄 수 있는 문서 내용 등의 인용이 일체 금지된다.

문서기재 내용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인 경우

3) 여사 기재 금지

(1) 전과 기재 금지. 1/2

상습, 누범 등 공소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기재가 금지된다. 그러나 判例는 전과를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判例~~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2) 악성격, 악소행 기재 금지 0.5/1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고인의 악성격, 악소행 등의 기재가 금지된다.

(3) 범행동기. 0.5/2

동기범죄가 아닌 한 범행의 동기를 기재하지 못한다.

(4) 여죄 기재 금지. 1/2

공소사실 外에 여죄 기재가 금지된다. 그러나 判例는 공소사실 外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죄를 기재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 공소장 일본주의 예외 1/2

즉결심판, 약식 절차의 경우, 공소제기 시 법관의 사유다. 증거물은 함께 제출하는바,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외이다. (및 심판청구 시)

5.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범위 1/1

공소제기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상소심, 파기 환송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위반효과! 1/1

이는 공소제기 방식이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자의 치유 0/4

사례 (4)의 내용 수정 (추가)

1.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가능여부 2.5/4

① 부정설로 있으나, ② 체포현장의 경우에도 임의성 인정되면 긍정하는 긍정설이 임의성 인정할 수 없다는 |타당하다. 判도, 체포현장이나 범행장소에서도 임의제출 압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다.

但. 임의성에 대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判).

2. 전자정보 압수의 요건 1/2

사안에서 ① 피압수자인 甲의 참여하에 ②. 혐의 관련 정보(성매매 영업 장부)를 선별해서 압수 ③ 압수목록 교부한 바, 절차적 권리 보장했다고 보여진다.

역대최강! 경찰간부/승진 전문학원
프라임 법학원